

의안번호	제 240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271 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8년 6 월 10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0
----------	-----

제출연월일 : 2008년 6월 10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민선4기 후반기 도정 역점시책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
-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한 유사기능의 통·폐합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기구 폐지 및 명칭변경

○ 폐 지 : 생명산업본부

○ 명칭변경

- 본청

- 자치행정국 ⇒ 행정국
- 경제투자본부 ⇒ 경제통상국
- 균형발전본부 ⇒ 균형발전국
- 건설방재본부 ⇒ 건설방재국
- 농정본부 ⇒ 농정국

- 사업소

- 내수면연구소 → 내수면사업소

□ 분장사무 조정

○ 행정국

- 민방위, 경보통제, 국가기반보호에 관한 사항(건설방재본부에서 이관)

○ 경제통상국

- 기업관련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신설)

○ 균형발전국

- 생명과학단지내 기관유치, BIO KOREA, 제천국제한방엑스포에 관한 사항(생명산업본부에서 이관)

○건설방재국

- 오송신도시, 오송생명과학단지, 밀레니엄타운, 바이오산업 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생명산업본부에서 이관)
-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균형발전본부에서 이관)

○농정국

- 식품산업에 관한 사항(신설)

○문화관광환경국

- 청주공항 활성화에 관한 사항(균형발전본부에 이관)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팀장 등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팀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팀의 설치) ① 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사업소의 국(부)·과와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도 본청

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③ 정무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도정 홍보 및 언론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7. 정책 및 기획의 수립 참여
8.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관리실, 행정국, 경제통상국, 균형발전국, 건설방재국, 농정국, 보건복지여성국, 문화관광환경국,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정책관리실) 정책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도정 주요정책과제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요 행정시책의 확인 및 평가
5. 의회 및 교육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6. 행정의 창의실용, 지방분권, 고객만족에 관한 사항
7. 도정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도 예산 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
9.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공기업 육성 지도
10. 조례·규칙의 심사·공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11. 각종 통계조사·분석 및 자료관리
12.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의전, 행사, 보안, 기록물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인사, 교육고시, 복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민원에 관한 사항
4.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갈등관리 및 여론동향에 관한 사항
5. 시·군 행정·인사운영,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
7.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민간협력,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9. 예산의 집행·결산 등 회계업무,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0.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등에 관한 사항
11. 민방위, 경보통제, 국가기반보호,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제8조(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경제동향의 분석관리
2. 유통진흥, 소비생활 향상,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3.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6. 산업입지 계획·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산업의 진흥·개발·육성 등에 관한 사항
8. IT·벤처 및 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9. 지방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10. 국제교류·협력, 통상진흥에 관한 사항
1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 등에 관한 사항
12. 기업육성 및 자금·기술·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13. 노사협력, 기업인 예우, 기업관련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14. 광업·자원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5. 가스·연탄관리 및 에너지절약사업 추진
16.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
17. 공산품 품질관리 및 기업체 품질 경영활동 지원

제9조(균형발전국) 균형발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이용계획·관리 및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지역균형개발·발전에 관한 사항
4.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한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및 도심공동화 해소 사업에 관한 사항
6.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7. 여객·화물 사업 및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지역연계교통체계 효율화
9. 물류시설단지 관리
10. 생명과학단지내 국책기관, 대학 등 유치에 관한 사항
11.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 등 추진에 관한 사항
12.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개선
13. 건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육성
14. 공공디자인,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제10조(건설방재국) 건설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3. 지방도, 시군도, 교량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재난관리, 재해예방대책, 재해조사 및 복구 계획의 수립
6. 하천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7.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의 관리·지도
8. 토지정보의 조사·등록관리 및 지적업무 및 토지 관리의 종합기획·조정
9. 공공기관 이전·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10. 기업도시 건설·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11. 오송신도시, 오송생명과학단지, 밀레니엄타운,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제11조(농정국)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정책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발전 종합기획·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어민후계자 등 인력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업생산의 종합 기획·조정
5. 농업소득 증진, 농촌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농지의 보전·이용, 농지개량 및 수리에 관한 사항
7. 종자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8.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9. 농산·수산·축산·임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0. 식량작물생산 종합대책 추진
11. 식품산업 진흥, 양정·양곡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2. 잠업, 특용작물, 채소, 과수 및 화훼에 관한 사항

- 13. 축산, 수산, 산림에 관한 사항
- 14.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12조(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 2. 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 3. 저출산·고령화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여성복지 정책 및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 5. 건강가정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6. 영유아 보육·아동 복지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 7.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및 재활에 관한 사항
- 8. 화장장·묘지·매장에 관한 사항
- 9. 결혼중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0. 공공보건, 신종전염병, 지방의료원에 관한 사항
- 1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12. 보건, 의무, 약무, 방역, 정신재활 및 위생에 관한 사항

제13조(문화관광환경국) 문화관광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문화예술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2. 문화재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3. 예술·종교단체에 관한 사항
- 4.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 5. 관광사업체 지도 육성 및 관광객 유치 홍보
- 6. 관광, 레포츠 산업 육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7.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에 관한 사항
- 8.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9.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10. 자연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기후변화대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11.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12. 대기·수질·토양·소음·유독물 등의 환경시설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3. 물관리 종합기획 조정 및 수질관리
14. 상·하수도 종합기획 조정
15. 지하수 관리 및 댐주변 관리에 관한 사항
16. 폐수 배출업소 및 축산폐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조정
2. 소방공무원교육·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소방관서 설치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화재의 예방·진압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
5.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
6. 도민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항공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충북과학대학

제1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충북과학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대학은 충청북도 옥천군 관내에 둔다.

제16조(학장) 대학에 학장을 두고,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 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제17조(학칙) 대학에 설치하는 학과, 학생정원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절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18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수원은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제19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도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도정 시책 교육에 관한 사항

제21조(운영) 연수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제22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술원은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제23조(원장) 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소관사무) 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
2. 농산물의 우량품종 육성 선발과 우량종자의 생산
3. 농업환경에 관한 시험, 농산물 저장 및 가공이용 연구
4. 농업경영,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 및 분석·연구
5. 식량, 원예, 잠업, 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농업과학기술 보급
6. 농업환경 보전과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7. 농업인 단체의 조직 및 육성
8.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및 농기계 훈련
9. 우량 잠종·상묘의 생산과 시험 검사 및 잠견검사용 기계운용 관리
10. 중앙정부 관련 시험연구기관과의 지역적인 연락,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11. 농촌생활자원 활용 기술보급
12. 농업·농촌 및 농경문화체험 사업 추진
13. 농산식품 개발 기술 보급
14. 농업발전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5조(특화작목시험장) ① 기술원에 도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 생리생태, 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시험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포도연구소, 북부농업연구소, 채소연구소, 잠사시험장을 둔다.

③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제26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구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27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소관사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급·만성 전염병 진단, 식·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2. 환경측정망 운영 및 환경오염물질·먹는물 검사에 관한 사항
3.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위생에 관한 시험·조사·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건환경연구원 및 설치목적의 달성하기 위한 시험·검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5절 소방서

제29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도 관할구역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1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화재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사항
2. 화재원인의 조사,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3. 위험물·소방시설의 기준 점검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5.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32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1절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제3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도로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34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소관사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 실험, 측량, 설계, 시행 및 공사감독
2. 도로포장 시행과 도로유지 보수관리
3.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
4.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
5.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

6. 중장비 운영 및 대여 관리
7. 중장비 부속품, 도로유지 보수자재 등의 물품수급 및 저장관리

제36조(지소)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제3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산림환경에 관한 시험연구, 도유림의 경영과 보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산림환경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제38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9조(소관사무)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휴양림 조성 관리
2. 산림과학박물관 운영관리
3.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4.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건립 및 운영
5. 임업 및 산림환경에 관한 연구
6. 우량묘목의 생산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조림 및 보호
7. 임산물 및 임업에 관한 시험 검정
8.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시험 연구
9. 도유림의 경영 및 보호관리
10. 사방사업 설계 및 시공

11. 산사태 등 재해예방 복구

제3절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제40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와 분석,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정, 가축개량 및 보급 관련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이하 "축산위생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축산위생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제41조(소장) 축산위생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소관사무) 축산위생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축산물 위생검사
2. 축산물 위해 및 안정성 평가관리
3. 부정축산물의 감정
4. 축산물 가공품 성분 및 규격검사
5.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6. 재난성가축전염병 관리
7. 가축질병진단 및 질병예찰
8. 가축의 개량 및 우량종축의 보급
9. 축산 및 사료에 관한 기술보급
10. 축산유전공학을 이용한 토종동물 유전자원 품종 보존

제43조(지소) 축산위생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충청북도농산사업소

제44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농산물 원종 및 보급종의 생산·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산사업소(이하 "농산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농산사업소는 충청북도 진천군 관내에 둔다.

제45조(소장) 농산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소관사무) 농산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산물 원종생산 및 품종개량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보급종자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제5절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제47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이하 "청남대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제48조(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9조(소관사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주변환경 보전 및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2. 청남대 시설 유지관리

- 3. 관광홍보·안내
- 4. 주변지역 민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절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제50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지역여성들에게 사회교육을 통해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여 지방화,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여성공동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이하 "여성발전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여성발전센터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51조(소장) 여성발전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2조(소관사무) 여성발전센터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
- 2. 여성사회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 3. 여성긴급전화 충북 1366 운영
- 4. 여성발전 연구개발 및 여성정보자료실 운영
- 5. 여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사업소

제5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내수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내수면사업소(이하 "내수면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내수면사업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관내에 둔다.

제54조(소장) 내수면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5조(소관사무) 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담수어 양식에 관한 시험 연구
2. 담수어 치어생산 보급 및 희귀어종 양식
3. 지역 특성어종 양식기술 개발 보급
4. 양어기술 교육 및 기술이전
5. 기타 담수어 양식에 필요한 사항

제56조(지소) 내수면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균형발전본부장·농정본부장·건설방재본부장”을 균형발전국장·농정국장·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투자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복지여성국장”을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균형발전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투자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을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경제투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투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제투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경제투자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책관리실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 건설방재국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균형발전본부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하며, 제16조

제2항 중 “과·팀의 과·팀장”을 “과의 과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균형발전본부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균형발전본부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균형발전본부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3항 중 “건설방재본부장”을 각각 “건설방재국

장”으로 하고, 제8조제4항 중 “과 ·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건설방재본부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농정보부장”을 “농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남북농업교류협력업무팀장”을 “남북농업교류협력업무과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 농어업 ·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농정보부장”을 “농정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 바이오농업 · 농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농정보부장”을 “농정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농정보부장”을 “농정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투자본부장 · 보건복지여성국장 · 농정보부장 · 건설방재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 · 보건복지여성국장 · 농정국장 ·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균형발전본부장, 농정보부장”을 “균형발전국장, 농정국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업무담당국·본부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담당과·팀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팀의 팀장”을 “과의 과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담당과·팀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팀장·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와 관련된 부서명칭은 규칙으로 정하
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분리 및 변경된 부서의 명
칭은 업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제25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포도연구소	옥천군 관내
북부농업연구소	단양군 관내
채소연구소	음성군 관내
잠사시험장	청주시 관내

[별표 2]

소방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29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충청북도 청주동부소방서	청주시 관 내	청주시 상당구, 청원군 중 내수읍, 북이면, 남일면, 가덕면, 문의면, 낭성면, 미원면, 오창읍 일원, 보은군 일원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청주시 관 내	청주시 흥덕구, 청원군 중 옥산면, 강내면, 강외면, 남이면, 부용면, 현도면 일원
충청북도 충주소방서	충주시 관 내	충주시 일원
충청북도 제천소방서	제천시 관 내	제천시, 단양군 일원
충청북도 영동소방서	영동군 관 내	영동군, 옥천군 일원
충청북도 증평소방서	증평군 관 내	증평군, 괴산군 일원
충청북도 진천소방서	진천군 관 내	진천군 일원
충청북도 음성소방서	음성군 관 내	음성군 일원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② 위원장은 <u>자치행정국장</u> 이 되고, 부 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②----- <u>행정국장</u> ----- ----- -----

□충청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④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와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부지사, <u>자치행 정국장</u>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④----- ----- 1.----- : -----, <u>행정국장</u>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 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비상기획담당간사 : <u>자치 행정국장</u>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③----- ----- ----- 1.----- : <u>행정국장</u>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구성)</p> <p>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책관리실장, <u>자치행정국장, 경제투자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복지여성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u>으로 한다.</p>	<p>제5조(구성)</p> <p>③----- -----<u>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균형발전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u>----- -----.</p>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p> <p>②위원회의 당연직위원 (5인은)은 정책관리실장, <u>자치행정국장, 경제투자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문화관광환경국장</u>으로 한다.</p>	<p>제3조(구성)</p> <p>②----- -----<u>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균형발전국장,</u>----- -----.</p>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u>자치행정국장</u>, 보건복지여성국장, 충청북도교육청교육국장,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보안과장, 노동부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장, 법무부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p>	<p>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③----- ----- ----- 1. ----- : <u>행정국장</u>, ----- ----- ----- -----</p>

□충청북도 주민투표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행정부지사, <u>자치행정국장</u>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p>	<p>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③----- -- <u>행정국장</u>----- ----- -----</p>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인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행정부지사·자치행정국장·보건복지여성국장</p>	<p>제3조(구성) ①----- ----- ----- ----- ----- 1.-----행정국장----- -----</p>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구성)</p> <p>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의 경제투자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제12조(구성)</p> <p>③----- -----경제 통상국장----- ----- -----</p>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회 설치)</p> <p>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투자본부장이 된다.</p>	<p>제4조(위원회 설치)</p> <p>②----- ----- -----경제통상 국장-----.</p>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③위원장은 경제투자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이 된다.	제13조(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③-----경제통상국장----- -----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분과위원회)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경제투자본부장이 되고 분과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장 등이 추천한 실무급 인사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③-----경제통상국장----- ----- -----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 구성등)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위촉한다. 1. 정책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투자본부장, 문화관광환경국장, 건설재난관리본부장	제4조(위원회 구성등) ②----- ----- ----- 1. 정책관리실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 건설방재국장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구성)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u>균형발전본부</u>장으로 한다.</p> <p>제16조(간사 및 서기)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u>과·팀</u>의 <u>과·팀장</u>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p>	<p>제10조(구성) ③-----<u>균형발전국장</u>-----.</p> <p>제16조(간사 및 서기) ② -----<u>과의과장</u>-----.</p>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u>균형발전본부</u>장이 된다.</p>	<p>제2조(구성) ②----- -----<u>균형발전국장</u>-----.</p>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원회 구성) ②위원장은 <u>균형발전본부</u>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를 담당하는 <u>과·팀장</u>이 된다.</p>	<p>제2조(위원회 구성) ②-----<u>균형발전국장</u>----- ----- <u>과장</u>-----.</p>

□충청북도 건축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구성) ②위원장은 <u>균형발전본부장</u>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구성) ②----- <u>균형발전국장</u> ----- -----.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u>건설방재본부장</u>	제7조(회계공무원) ①----- -----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u>건설방재본부장</u> 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예산,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분야를 담당하는 과·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③----- ----- <u>건설방재국장</u> -----. ④----- ----- 과장 ----- ----- -----

□충청북도 재해영향평가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②위원장은 <u>건설방재본부장</u> 이 된다.	제12조(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②----- <u>건설방재국장</u> -----.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p> <p>1. 기금운용관 : <u>농정보부장</u></p> <p>2. 분임기금운용관 : <u>남북농업교류협력 업무팀장</u></p>	<p>제8조(기금관리공무원)①-----</p> <p>-----.</p> <p>-----</p> <p>1. ----- : <u>농정국장</u></p> <p>2. ----- : <u>남북농업교류협력업무과장</u></p>

□충청북도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위원회의 구성)</p> <p>③당연직위원은 <u>농정보부장</u>, <u>농업기술원장</u>, <u>농협중앙회충북지역본부장</u>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제20조(위원회의 구성)</p> <p>③-----<u>농정국장</u>-----</p> <p>-----</p> <p>-----</p> <p>-----</p> <p>-----.</p>

□충청북도 바이오농업·농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구성)</p> <p>②당연직 위원은 <u>농정보부장</u>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바이오농업 관련 유관기관에 종사 하는 자,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p>제6조(구성)</p> <p>②-----<u>농정국장</u>-----</p> <p>-----</p> <p>-----</p> <p>-----</p> <p>-----.</p>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 설치) ③위원회 위원장은 <u>농정본부장이</u>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③----- <u>농정국장</u> ----- -----.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구성 및 임기) ③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위촉한다. 다만, 정책관리실장 및 <u>복지여성국장</u> , 충청북도의회이장이 추천하는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2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25조(구성 및 임기) ③----- ----- ----- <u>보건복지여성국장</u> ----- -----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②당연직 위원은 도소속 공무원으로 <u>경제투자본부장·보건복지여성국장·농정본부장·건설방재본부장이</u> 되고 위촉위원은 민간인, 기업인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구성) ②----- <u>경제통상국장·보건복지여성국장·농정국장·건설방재국장</u> ----- ----- -----.

□충청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2조(간사)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업무 를 주관하는 <u>담당과·팀장</u>이 된다.</p>	<p>제12조(간사) ②----- -----<u>담당과장</u>-----.</p>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

현행	개정안
<p>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u>팀장</u>으 로 한다.</p>	<p>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③----- -----<u>과장</u> -----.</p>

□충청북도공여구역주변지역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현행	개정안
<p>제8조(간사 및 서기)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u>팀 장·과장</u>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 원이 된다.</p>	<p>제8조(간사 및 서기) ②-----<u>과 장</u>----- -----.</p>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⑥(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그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방농촌진흥기구) ①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 소속으로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시장·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③ 농업기술원에는 원장(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을 말한다)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소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과 군수의 명을 받는다)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와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농업기술원에 국이나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농업기술센터에 과나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과와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부장과 과장·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 (지방공립대학 등)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대학과 전문대학 등(이하 "지방공립대학"이라 한다)의 조직과 분장사무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방공립대학의 하부조직으로 대학에 교무처·학생처·기획처 등과 사무처나 사무국을, 전문대학에 사무국(인천전문대학에 한한다)·교무과·학생과와 서무과 등을 둘 수 있다.

③ 대학의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은 일반직 3급 지방공무원으로, 과장

은 일반직 4급이나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사무처장 외의 처장 등은 교수나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④ 전문대학의 사무국장은 일반직 4급 지방공무원으로, 서무과장은 일반직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서무과장 외의 과장은 교수·부교수나 조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⑤ 대학과 전문대학 외의 공립대학(「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등을 포함한다)의 기구와 정원의 책정에 대하여는 해당 공립대학의 학과수·학생수·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제1항의 교원확보기준과 다른 국·공립대학의 정원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총장·학장
2. 교수·부교수·조교수나 전임강사
3. 조교

제18조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이하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두는 원장·과장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 (보건환경연구원 등)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보건환경연구원

에 원장을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부와 과(과)를 둘 수 있다.

②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과 부장·과장(과장)은 지방보건연구원·지방환경연구원이나 지방수의연구원으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지방수의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라 임용하는 보건소장은 4급이나 5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20조 (사업소와 출장소 등) ① 사업소와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③ 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도는 상수도·도시철도 등 각종 사업의 집행과 관할구역의 지역사업소에 대한 원활한 지휘·감독과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사업본부·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출장소 중 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의 장과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